

「한국체육대학교 자체 평가규정」

일부개정 2023. 8. 24. 규정 제893호

1. 개정이유

- 자체평가의 목적과 정의 및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평가주기 수정
- 학제개편에 따른 사항 등을 평가기획위원회에 반영

2. 주요내용

- 해당 규정은 학칙 제96조(자체평가)에 따른 위임 규정이므로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정하여 “한국체육대학교 자체평가 규정”으로 변경
- 현행 자체평가 규정에 “외부평가”를 포함하고 있어 혼선을 유발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자체평가의 정의 및 구분을 명확하게 재정의함(안 제2조, 제3조)
 - 자체평가는 자체종합평가, 행정부서평가, 학과평가, 부속·연구협력시설평가, 그 밖의 평가(신설)로 총 5개로 구분하여 실시
-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함(안 제4조)
- 평가기획위원회 및 평가연구위원회를 각각 자체평가기획위원회, 자체평가연구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여 명확히 표기함(안 제5조 ~ 제13조)
- 평가기획위원회에 ‘스포츠문화예술대학장’, ‘보건진료소장’, ‘장애학생지원센터장’, ‘대외협력단장’ 추가(안 제5조제2항)
- 자체평가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“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여 명시함(안 제5조제3항제4호)
-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(참고) :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, 「국립학교설치령」 제7조 제4항, 「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불 임 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「한국체육대학교 자체 평가규정」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자체평가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의 학생 및 교원 평가 이외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에 대한 각종 평가에 필요한” 을 “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 제96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” 으로 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자체평가” 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자체평가의 구분 및 대상) 자체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1. 자체종합평가 :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행정부서평가 : 행정부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3. 학과평가 : 학과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4. 부속·연구협력시설평가 : 「국립학교설치령」 제7조제4항에 따른 부속시설 및 연구협력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자체평가 :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

제4조(자체평가의 운영)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3조제1호의 자체종합평가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 해당연도 자체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5조의 제목 “(평가기획위원회)” 를 “(자체평가기획위원회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가기획위원회” 를 “자체평가기획위원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평가기획위원회는 스포츠과학대학장, 생활체육대학장” 을 “자체평가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스포츠과학대학장, 생활체육대학장, 스포츠문화예술대학장” 으로, “교무처장, 기획처장” 을 “교무처장” 으로, “교수학습개발센터장, 산학협력본부장, 체육과학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” 을 “교수학습개발센터장, 보건진료소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, 산학협력본부장, 체육과학연구소장, 대외협력단장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” 을 “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평가” 를 “자체평가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평가 기본계획” 을 “자체평가 기본계획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평가결과” 를 “자체평가 결과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평가” 를 “자체평가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평가기획위원회” 를 각각 “자체평가기획위원회” 로 한다.

4. 제9조제1항의 자체평가연구위원회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
제6조의 제목 “(평가연구위원회)” 를 “(자체평가연구위원회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가 업무” 를 “자체평가 업무” 로 하며, 같은 항 및 제2항 중 “평가연구위원회” 를 각각 “자체평가연구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7인” 을 “7명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” 을 “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평가시행” 을 “자체평가 시행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평가지표” 를 “자체평가 지표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외부평가” 을 “제4조 단서조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평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평가연구위원회” 를 각각 “자체평가연구위원회” 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평가의 지표 및 방법)” 을 “(자체평가의 지표 및 방법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가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평가기획위원회” 를 “자체평가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제출)” 을 “(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제출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가기획위원회” 를 “자체평가기획위원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평가자료를 평가연구위원회” 를 “평가 자료를 자체평가연구위원회” 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평가결과 제출과 통보)” 를 “(자체평가 결과 제출과 통보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가연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평가기획위원회” 를 “자체평가연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자체평가기획위원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평가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결과” 를 “자체평가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 결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평가결과” 를 “자체평가 결과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평가결과” 를 “평가 결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평가기획위원장” 을 “자체평가기획위원장” 으로, “4인” 을 “4명” 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평가결과의 활용)” 을 “(자체평가결과의 활용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가기획위원장은 평가결과” 를 “자체평가기획위원장은 평가 결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평가결과” 을 “자체평가 결과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평가기획위원회, 평가연구위원회” 를 “자체평가기획위원회, 자체평가연구위원회” 로, “범위내” 를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기타)” 를 “(운영세칙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평가기획위원회” 를 “자체평가기획위원회” 로 한다.

부 칙(제893호, 2023. 8. 2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한국체육대학교 자체 평가규정</u>	<u>한국체육대학교 자체평가 규정</u>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u>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학생 및 교원 평가 이외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에 대한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 제96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자체평가”라 함은 총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본교 전체 및 분야별 평가를 말한다. ② “외부평가”라 함은 정부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본교 전체 및 분야별 평가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자체평가”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</p>
<p>제3조(평가의 구분 및 대상) ① 평가는 평가시행기관에 따라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한다. ② 자체평가는 행정부서 평가, 학과 평가, 부속시설(연구소 포함) 평가, 자체종합평가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되, 다음 각 호를 평가대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정부서 평가 : 행정부서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. 학과 평가 : 학과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. 부속시설 평가 : 부속시설(연구소 포함)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(「국립학교설치령」 제7조제4항 관련) 4. 자체종합평가 :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(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1항 관련) <p>③ 외부평가는 분야별로 기관평가 인증 및 전문분야 평가로 구분하되, 다음 각 호를 평가대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관평가 인증 :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. 전문분야 평가 : 외부 평가기관에서 지정한 특정 분야 	<p>제3조(자체평가의 구분 및 대상) <u>자체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체종합평가 :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. 행정부서평가 : 행정부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. 학과평가 : 학과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. 부속·연구협력시설평가 : 「국립학교설치령」 제7조제4항에 따른 부속시설 및 연구협력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. 그 밖의 자체평가 :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평가의 주기 및 기간) ① 행정부서 평가와 학과 평가는 1년 주기로 직전 학년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, 부속시설 평가와 자체 종합평가는 2년 주기로 평가 시행년도의 직전 학년도 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</p> <p>② 외부평가는 평가기관에서 지정한 평가 주기 및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 기관평가 인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자체평가의 운영)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3조제1호의 자체종합평가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대학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 해당연도 자체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</p>
<p>제5조(평가기획위원회) ① 평가업무의 종합적 심의를 위하여 <u>평가기획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② <u>평가기획위원회</u>는 <u>스포츠과학대학장, 생활체육대학장, 대학원장, 사회체육대학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훈련학생처장, 사무국장, 학술정보원장, 평생교육원장, 생활관장, 인재개발원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산학협력본부장, 체육과학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<u>평가기획위원회</u>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평가</u>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2. <u>평가기본계획</u>의 수립에 관한 사항 3. (생략) <p><신설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<u>평가결과</u> 활용에 관한 사항 5. 그 밖의 <u>평가</u>에 관한 주요 사항 <p>④ <u>평가기획위원회</u>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<u>평가기획위원회</u>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자체평가기획위원회) ① ----- ----- <u>자체평가기획위원회</u>-----.</p> <p>② <u>자체평가기획위원회</u>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<u>스포츠과학대학장, 생활체육대학장, 스포츠문화예술대학장</u>----- <u>교무처장</u>----- ----- <u>교수학습개발센터장, 보건진료소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, 산학협력본부장, 체육과학연구소장, 대외협력단장</u>-----.</p> <p>③ <u>자체평가기획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자체평가</u> -----. 2. <u>자체평가 기본계획</u>-----. 3. (현행과 같음) 4. 제9조제1항의 <u>자체평가연구위원회</u>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. <u>자체평가 결과</u>----- 6. ----- <u>자체평가</u>----- <p>④ <u>자체평가기획위원회</u>-----.</p> <p>⑤ <u>자체평가기획위원회</u> -----.</p>
<p>제6조(평가연구위원회) ① <u>평가</u>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가분야별로 <u>평가연구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② <u>평가연구위원회</u>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</p>	<p>제6조(자체평가연구위원회) ① <u>자체평가</u>----- -----<u>자체평가연구위원회</u>-----.</p> <p>② <u>자체평가연구위원회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행정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<u>7인</u>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<u>평가연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</u> 담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평가시행</u> 세부계획의 수립 2. <u>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편람</u> 작성 3. (생략) 4. <u>외부평가</u> 편람과 지표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<p>④ <u>평가연구위원회</u>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<u>평가연구위원회</u> 위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 분야별 평가기간으로 한다.</p>	<p>-----<u>7명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<u>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자체평가 시행</u> ----- 2. <u>자체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편람</u>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제4조 단서조항에 따른 인정기관의</u>----- <p>④ <u>자체평가연구위원회</u>-----.</p> <p>⑤ <u>자체평가연구위원회</u> -----.</p>
<p>제7조(평가의 지표 및 방법) ① 자체평가의 평가지표는 <u>평가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평가기획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외부평가는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 지표와 방법에 따른다.</u></p>	<p>제7조(자체평가의 지표 및 방법) ① ----- ----- <u>자체평가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<p>제8조(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제출)</p> <p>① <u>평가기획위원회</u>에서 심의 의결된 평가 기본계획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평가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일까지 <u>평가자료를 평가연구위원회</u>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제출)</p> <p>① <u>자체평가기획위원회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<u>평가 자료를 자체평가연구위원회</u>-----.</p>
<p>제9조(평가결과 제출과 통보) ① <u>평가연구위원회</u>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<u>평가기획위원회</u>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<u>평가기획위원회</u> 위원장은 <u>평가기획위원회</u>에서 <u>심의한 평가결과</u>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</p> <p>③ <u>평가결과</u>는 평가 종료 후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.</p>	<p>제9조(자체평가 결과 제출과 통보) ① <u>자체평가연구위원회</u>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<u>자체평가기획위원회</u>-----.</p> <p>② <u>자체평가기획위원회</u> 위원장은 <u>자체평가기획위원회</u>에서 <u>심의한 평가 결과</u>-----.</p> <p>③ <u>자체평가</u>-----.</p>
<p>제10조(재심청구와 재심위원회) ① 자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<u>평가결과</u>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<u>평가기획위원장</u>과</p>	<p>제10조(재심청구와 재심위원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평가 결과</u>-----.</p> <p>② -----<u>자체평가기획위원장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청구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-----4명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평가결과의 활용) ① <u>평가기획위원장은 평가결과</u>를 해당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자체종합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시한다.</p> <p>② <u>평가결과</u>는 교직원과 부서의 인센티브 자료, 대학발전계획과 행정·재정적 업무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자체평가 결과의 활용) ① <u>자체평가 기획위원장은 평가 결과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<u>자체평가 결과</u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2조(수당) <u>평가기획위원회, 평가연구위원회</u> 및 재심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<u>범위내</u>에서 회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수당) <u>자체평가기획위원회, 자체평가 연구위원회</u> ----- <u>범위</u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본교의 평가 관련 사항은 <u>평가기획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13조(운영세칙) -----</p> <p>-----<u>자체평가기획위원회</u>-----</p> <p>-----.</p>
	<p>부 칙(제893호, 2023. 8. 24.)</p> <p>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